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4호 2024. 2. 5.(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622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623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11
- 하동군 조례 제2624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625호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7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 하동군 규칙 제1272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4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16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49
- 하동군 고시 제2024-17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50
- 하동군 고시 제2024-1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51
- 하동군 고시 제2024-2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2
- 하동군 고시 제2024-2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55
- 하동군 고시 제2024-22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56
- 하동군 고시 제2024-2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61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23호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2
- 하동군 공고 제2024-132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72
- 하동군 공고 제2024-194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3

일 반 공 고

- 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2024-3호 2024년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96
- 하동군 공고 제2024-124호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05
- 하동군 공고 제2024-125호 2024년도 전락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11
- 하동군 공고 제2024-128호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14
- 하동군 공고 제2024-130호 2024 청년 나눔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공고 122
- 하동군 공고 제2024-135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8
- 하동군 공고 제2024-158호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 129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622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공단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관광개발,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을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산림경영,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산

림녹지”를 “산림휴양, 산림소득 등 산림”으로 한다.

2.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5호 중 “선진교통”을 “교통정책, 교통행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농업정책,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을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
지원, 농산물융복합”을 “국제통상,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TF”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예산업, 과수”를 “원예과수, 딸기산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급”을 “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③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소·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
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

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관·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소·관·과 및 읍면”을 “국·소·단·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⑦ 「하동군 공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각각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관·과”를 “국·단·과”로 한다.

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

⑯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소·관·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㉓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

㉖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

[별 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 일원
화개보건지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1-14	화개면 일원
악양보건지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	악양면 일원
적량보건지소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	적량면 일원
횡천보건지소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	횡천면 일원
고전보건지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3-4	고전면 일원
금남보건지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4	금남면 일원
금성보건지소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금성면 일원
진교보건지소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	진교면 일원
양보보건지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25	양보면 일원
북천보건지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	북천면 일원
청암보건지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	청암면 일원
옥종보건지소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28	옥종면 일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u>미래 전략담당관</u>을 둔다.</p> <p><신 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① ----- <u>지역활 력추진단</u>-----.</p> <p>② <u>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 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 귀촌, 공단설립 등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한다.</u></p>
<p>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u>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환 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 업과, 시설체육과를 둔다.</u></p> <p>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u>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개발,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 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2. (생 략)</p> <p>3. <u>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 경영,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u></p> <p>4. (생 략)</p> <p>5. <u>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 시설, 문화관광시설, 공단설 립 등 시설체육에 관한 사항</u></p>	<p>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u>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 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 과, 수도사업과를 둔다.</u></p> <p>② ----- -----.</p> <p>1. ----- <u>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등 문화 체육</u>-----</p> <p>2. <u>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 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 흥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 <u>산림휴양, 산림소득 등 산림</u> -----</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삭 제></p>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 4. (생략)
- 5.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선진교통 등 안전교통에 관한 사항
- 6.·7. (생략)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농업정책,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 축산에 관한 사항
- 2. 농차산업, 농차기반, 유통마케팅, 수출지원, 농산물유통복합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 3. 스마트농업, 농업지원, 식량특작, 원예산업, 과수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교통정책, 교통행정 -----
- 6.·7. (현행과 같음)

제13조(소관사무) -----
-----.

- 1.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 -----
- 2 -----

- 국제통상, 농산물유통복합, 농산물축제 T F -----
- 3 -----

---원예과수, 딸기산업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칠



하동군 조례 제 2623 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연 6만원(반기 3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이 반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반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 배부하고,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반기별로 교부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 사업주(목욕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업소 중 주소지 읍면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목욕업소가 없거나 장기간 휴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카드의 수불관리)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카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카드번호	
--	--	------	--

구 분 신규 재발급 (분실 훼손 그 외)

신청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시설입소여부 <input type="checkbox"/> 미입소 <input type="checkbox"/> 입소 (기관명 : 연락처 :)	타목욕서비스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사용 (기관명 : 연락처 :)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

(뒷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하동군 어르신 목욕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	지원 종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	지원 종료 후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	지원 종료 후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어르신 목욕 지원 카드 제작사	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24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625 호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

제11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제12조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지역과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광역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 × 297mm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p> <p>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p> <p>① ----- <u>시행규칙 제6조제3항</u>-----</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생략)</p> <p>②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p> <p>1. <u>임산부 및 영유아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u></p> <p>2. (생략)</p> <p><u><신 설></u></p>	<p>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u></p> <p>1. <u>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3. <u>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u></p>
<p>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p>	<p>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p>

상자 등록·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생 략)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2. -----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
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
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
견서

3. (생 략)

③ ~ ⑧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
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
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
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
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
정서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
간) -----

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1. (생략)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

- 1.(현행과 같음)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지역과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광역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
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
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
원에 필요한 사항

② ~ ⑥ (생략)

제20조(교육) ①·②(생략)

1. ~ 4.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
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
원에 필요한 사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교육) ①·②(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③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규칙 제 127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을 “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가목 중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은 삭제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으로 하며, 라목(중전의 다목)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나.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과장”을 “단장,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본청 단장,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소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소·관·과장”을 “단·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기획담당주사가 된다”를 “성과관리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

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소·관·과 등”을 “국·소·단·과 등”으로 한다.

③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3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4호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⑥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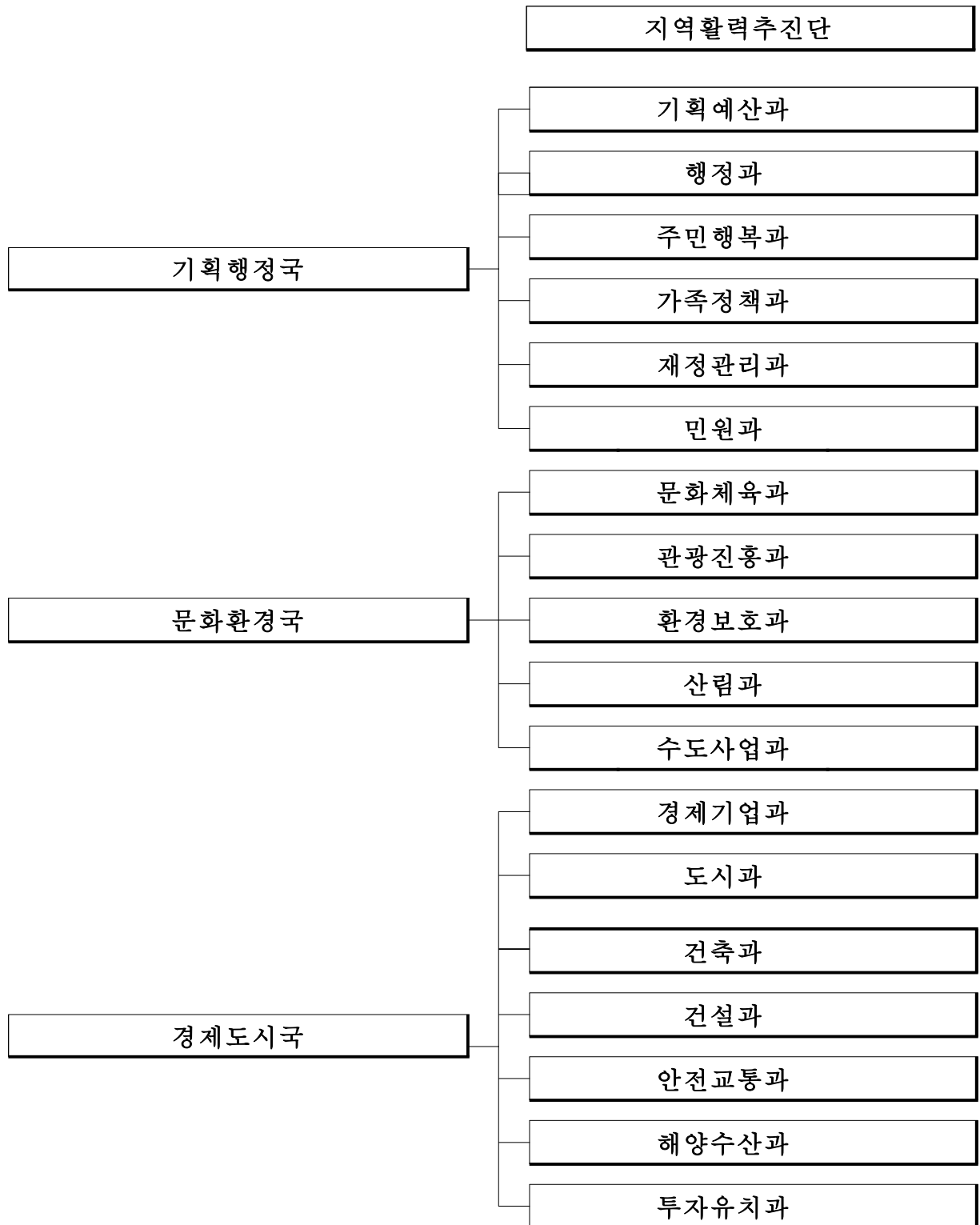
⑦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농촌진흥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제1항 관련)



지역활력추진단

분장 사무
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공단설립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분장 사무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분장 사무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 발전 및 직원 교육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주민행복과장

분장 사무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장

분장 사무

보육·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시설,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재정관리과장

분장 사무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세입·채납관리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항 사항

민원과장

분장 사무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

2.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장

분장 사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 지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과장

분장 사무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대규모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과장

분장 사무
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

분장 사무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산불방지,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지관리, 임도, 산사태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임산물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마을 쉼터, 꽃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과장

분장 사무

상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하수도 시설 설치, 지도 등에 관한 사항

하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도시국

경제기업과장

분장 사무
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중소·사회적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의 사항)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과장

분장 사무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가,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심 내 녹지조성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

분장 사무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건축분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과장

분장 사무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교통과장

분장 사무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예방 및 처벌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장

분장 사무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장

분장 사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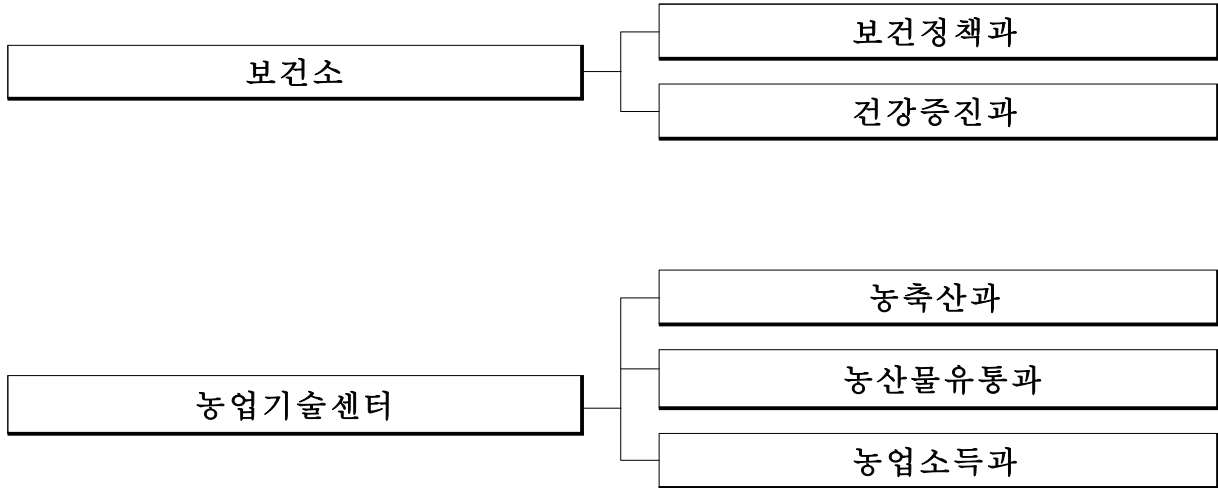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대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1.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분장 사무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의약에 관한 사항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 의료혁신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장

분장 사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만성질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치매예방 등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등 진료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분장 사무
농업혁신 및 국내외 농업인력관리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

농산물유통과장

분장 사무
녹차산업 육성·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유산 관리 및 차 체험센터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의 수출지원 및 해외유학·청년인력 해외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농산물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

농업소득과장

분장 사무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u>담당관</u> 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① ----- <u>단장</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u>담당관</u>) <u>미래전략담당관</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u>단장</u>) <u>지역활력추진단장</u> ----- -----.
제3조의2(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조의2(국장·과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 ----- ----- -----.
가. <u>문화관광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 <u>문화체육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u><신 설></u>	나. <u>관광진흥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u>환경보호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u>산림녹지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라. <u>산림과장</u> ----- ----- -----
라. (생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마. <u>시설체육과장</u> : 지방행정사무관,	<u><삭 제></u>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사무분장)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신 설>

제6조의2(사무분장) 군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9조(사무분장) (생 략)

<신 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 과장 -----.

② 본청 단장,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사무분장) ①----보건소 과장-----.

② 보건소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분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5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규칙 제 1272 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세부분장사무(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분 장 사 무
의정담당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기록물·보안·관인·공인 관리 3. 의원 등록관리 4.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각종수당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원 간담회 및 연수·연찬회 관련 사항 6. 의전에 관한 사항 7.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8.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인사·조직·성과상여금·성과연봉·교육훈련·복무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위원 선정(추천)관리 11.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12. 의회사매결연 업무에 관한 사항 1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4.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 물품 및 차량유지·관리 16.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조정 17.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8. 의정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 19.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20. 방송 및 음향시설 관리 21. 과내 서무업무 및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담당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지원

구 분	세 부 분 장 사 무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의안의 접수·회부·이송 등 처리 및 의결 문서 보존관리 5. 주민조례발안 업무에 관한 사항 6.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 7.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8.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 총괄 9.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 및 검색시스템 운영 관리 11. 본회의, 위원회 등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2. 의정 보고서 및 의정 백서 발간 13.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구 분	세 부 분 장 사 무
정책지원 담당	1.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 2. 정책지원관 업무수행의 지휘 및 감독 3. 조례 등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 4.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5. 의원발의 의안 작성 및 기초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6.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선안 연구 7.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8. 의원 군정질문, 5분발언 등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제공 9.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하동군 고시 제2024 - 16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01. 2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3
2. 허가연월일 : 2024. 01. 24.
3. 점·사용의 목적 : 배수장 증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264, 64㎡
(인근:진교면 고흥리 37-21)
5. 점·사용의 기간 : 2024. 01. 24.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청(건설과)

하동군 고시 제2024-1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1. 25.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00008
2. 허가일 : 2024. 01. 25.
3. 점·사용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사업
4. 점·사용 장소 :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467-2(인근: 신월리 산84)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01-14(인근: 성천리 470)
5. 점·사용 면적 : 799㎡
6. 점·사용의 기간 : 2024. 01. 25. ~ 2024. 06. 30.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4 - 18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1. 25.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4
2. 허가연월일 : 2024. 1. 25.
3. 점·사용의 목적 : 용수관로 매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황천면 애치리 1188-15 , 409㎡
(인근:황천면 애치리 1178-1)
5. 점·사용의 기간 : 2024. 01. 25.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하동군 고시 제2024 - 20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169-9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59-9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1.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산35-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169-9	20240130	소가 우는 형상을 하고 있는 뒷산의 모양을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79-2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27-46	20240130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94-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633	20240130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40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41-10	20240130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산13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숙재1길 114-17	20240130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839-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재길 343	20240130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97-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80-20	20240130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94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산성길 91-13	20240130	뒷산에 오래된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아래 위치한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38-2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35-17	20240130	섬진강 하류 놓은 포구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로명을 혼용하여 고포큰골길로 명명	

업무구분	종전주소	효력발생일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59-9	202401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4 - 21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1. 3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6
2. 허가연월일 : 2024. 1. 30.
3. 점·사용의 목적 : 불무교 교량 재가설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888-76번지 , 86㎡
(인근:옥종면 북방리 921-1)
5. 점·사용의 기간 : 2024. 01. 30.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건설과)

하동군 고시 제2024-22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1.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 근점	W10146	35-03-15.0565	127-52-23.3101	중부	273454.55	279655.99	118.541	양보면 지례리 44-2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47	35-03-11.1161	127-52-25.0718	중부	273333.50	279701.70	103.168	양보면 지례리 44-2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48	35-03-08.6790	127-52-24.6679	중부	273258.31	279692.12	97.828	양보면 지례리 44-1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49	35-03-06.4943	127-52-24.6708	중부	273190.98	279692.78	90.447	양보면 지례리 1178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50	35-03-07.6702	127-52-22.9225	중부	273226.83	279648.16	111.848	양보면 지례리 27-5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51	35-09-36.5706	127-55-01.8541	중부	285248.38	283565.58	70.518	옥종면 북방리 732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52	35-09-34.2093	127-55-03.7197	중부	285176.04	283613.47	63.465	옥종면 북방리 산17-1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53	35-09-37.2586	127-55-07.3905	중부	285270.88	283705.51	61.846	옥종면 북방리 산16-1	2024.01.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54	35-08-47.9279	127-43-17.4613	중부	283602.47	265748.83	148.150	악양면 신대리 803	2024.01.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점	W10155	35-08-45.5973	127-43-19.0663	중부	283530.94	265789.98	159.945	악양면 신대리 805	2024.01.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56	35-08-43.6394	127-43-19.7034	중부	283470.72	265806.55	168.538	악양면 신대리 66-5	2024.01.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57	35-14-31.5813	127-44-25.2806	중부	294206.02	267386.68	579.654	청암면 목계리 1773	2024.01.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58	35-14-31.4054	127-44-22.5376	중부	294200.08	267317.37	571.446	청암면 목계리 1781	2024.01.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59	35-14-31.2806	127-44-18.3578	중부	294195.45	267211.71	563.203	청암면 목계리 404-3	2024.01.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0	35-05-10.4643	127-48-24.1157	중부	276960.17	273565.54	69.419	횡천면 학리 산89	2024.01.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1	35-05-09.5247	127-48-22.6832	중부	276930.92	273529.49	65.094	횡천면 학리 591	2024.01.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2	35-05-08.3294	127-48-20.9300	중부	276893.72	273485.37	55.659	횡천면 학리 599	2024.01.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3	35-59-38.0260	127-50-08.1926	중부	266736.76	276287.82	58.284	금남면 덕천리 925-2	2024.01.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4	34-59-33.0546	127-50-07.2923	중부	266583.36	276266.27	68.924	금남면 덕천리 산117-22	2024.01.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5	34-59-31.2790	127-50-08.9405	중부	266528.99	276308.53	72.921	금남면 덕천리 산123-4	2024.01.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6	35-09-55.8031	127-41-33.5395	중부	285675.58	263103.68	175.505	악양면 입석리 산50-1	2024.01.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7	35-09-53.5896	127-41-35.9917	중부	285607.80	263166.22	171.651	악양면 입석리 953	2024.01.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8	35-09-51.4604	127-41-37.0042	중부	285542.36	263192.30	163.099	악양면 입석리 395-1	2024.01.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69	35-04-18.2316	127-45-23.5977	중부	275314.60	269004.87	9.179	하동읍 비파리 889	2024.01.11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0	35-04-19.7958	127-45-23.3671	중부	275362.76	268998.67	15.540	하동읍 비파리 611-66	2024.01.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1	35-04-20.6630	127-45-23.3908	중부	275389.49	268999.06	19.790	하동읍 비파리 611-66	2024.01.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2	35-04-20.9321	127-45-27.3157	중부	275398.54	269098.44	22.967	하동읍 비파리 379-10	2024.01.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3	35-04-17.9192	127-45-26.6231	중부	275305.55	269081.60	9.867	하동읍 비파리 876-5	2024.01.11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4	35-11-07.9958	127-46-51.3137	중부	287960.03	271128.24	151.951	청암면 상이리 산228-2	2024.01.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5	35-11-09.1129	127-46-53.6390	중부	287994.92	271186.80	151.579	청암면 상이리 490-10	2024.01.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6	35-11-09-453 0	127-46-57.7114	중부	288006.21	271289.76	149.865	청암면 상이리 490-14	2024.01.1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7	35-10-01.9526	127-47-42.2520	중부	285934.88	272433.32	304.608	청암면 평촌리 산134	2024.01.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8	35-10-00.5847	127-47-41.4721	중부	285892.56	272413.92	297.118	청암면 평촌리 산166	2024.01.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79	35-10-01.0663	127-47-44.2094	중부	285907.96	272483.07	315.366	청암면 평촌리 산126-1	2024.01.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0	35-00-19.4285	127-53-55.0270	중부	268062.64	282029.02	40.842	진교면 양포리 315-1	2024.01.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1	35-00-24.0079	127-53-49.1625	중부	268202.43	281879.05	52.883	진교면 고룡리 867-2	2024.01.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2	35-00-27.3660	127-53-49.4140	중부	268305.98	281884.50	55.413	진교면 고룡리 867-2	2024.01.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3	35-00-25.6754	127-53-40.5025	중부	268251.85	281659.00	69.283	진교면 양포리 364-4	2024.01.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4	35-13-49.4668	127-38-18.1385	중부	292843.66	258112.37	154.872	화개면 용강리 산130-1	2024.01.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5	35-13-49.2704	127-38-21.8221	중부	292838.21	258205.56	135.899	화개면 용강리 산113-1	2024.01.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6	35-13-49.7927	127-38-23.8611	중부	292854.64	258257.02	127.437	화개면 용강리 1361	2024.01.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7	35-13-37.8292	127-38-24.2251	중부	292486.00	258268.60	92.002	화개면 삼신리 23-1	2024.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8	35-13-40.0723	127-38-24.8989	중부	292555.23	258285.19	92.304	화개면 삼신리 22-3	2024.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89	35-13-42.4215	127-38-26.4961	중부	292627.89	258325.11	94.366	화개면 삼신리 964	2024.01.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0	35-12-02.4936	127-38-17.9133	중부	289546.86	258127.86	130.262	화개면 탑리 산35	2024.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1	35-12-00.3744	127-38-16.5238	중부	289481.33	258093.13	122.480	화개면 탑리 81	2024.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2	35-12-00.3380	127-38-13.5185	중부	289479.72	258017.11	106.742	화개면 탑리 산38	2024.01.1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3	35-09-53.9031	127-41-41.0272	중부	285618.35	263293.58	154.393	악양면 입석리 346-1	2024.01.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4	35-09-51.4717	127-41-42.5788	중부	285543.69	263333.37	142.632	악양면 입석리 339-1	2024.01.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5	35-09-49.3557	127-41-43.9192	중부	285478.71	263367.75	133.011	악양면 입석리 490-9	2024.01.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6	35-01-51.6574	127-46-55.3193	중부	270815.39	271364.19	1.940	하동읍 목도리 29-167	2024.01.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7	35-01-55.8361	127-46-51.6764	중부	270943.45	271270.83	2.957	하동읍 목도리 223	2024.01.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8	35-02-00.5255	127-46-47.8337	중부	271087.20	271172.30	3.618	하동읍 목도리 223	2024.01.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199	35-05-56.7876	127-44-04.9556	중부	278337.01	266989.98	101.793	하동읍 두곡리 1375	2024.01.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0	35-05-55.3645	127-44-06.6359	중부	278293.46	267032.86	92.225	하동읍 두곡리 1378-3	2024.01.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1	35-05-53.2496	127-44-09.3693	중부	278228.80	267102.57	84.507	하동읍 두곡리 1144-1	2024.01.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2	35-13-04.7643	127-37-58.7676	중부	291462.86	257631.32	154.029	화개면 삼신리 산62-11	2024.01.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3	35-13-03.3538	127-38-00.8166	중부	291419.72	257683.42	144.951	화개면 삼신리 산53-2	2024.01.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4	35-13-03.2589	127-38-03.0212	중부	291417.15	257739.19	135.586	화개면 삼신리 317-10	2024.01.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5	35-10-05.7080	127-38-53.7535	중부	285953.58	259057.95	40.512	화개면 부춘리 606-4	2024.01.24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6	35-10-05.9116	127-38-49.9684	중부	285959.23	258962.12	28.104	화개면 부춘리 1165	2024.01.2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7	35-10-07.1958	127-38-46.2383	중부	285998.19	258867.47	22.856	화개면 부춘리 1212	2024.01.2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8	35-07-10.5488	127-42-43.8704	중부	280595.28	264920.01	288.308	하동읍 흥룡리 500-1	2024.01.29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09	35-07-09.7730	127-42-45.0657	중부	280571.59	264950.45	282.316	하동읍 흥룡리 산53	2024.01.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0	35-07-10.0833	124-42-48.0131	중부	280581.69	265025.01	267.383	하동읍 흥룡리 480	2024.01.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1	35-10-21.3517	127-43-16.9840	중부	286481.56	265715.88	127.954	악양면 중대리 산125	2024.01.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2	35-10-18.7691	127-43-20.4086	중부	286402.60	265803.11	133.430	악양면 정동리 653	2024.01.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3	35-10-18.9191	127-43-23.0761	중부	286407.71	265870.58	143.447	악양면 정동리 653	2024.01.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4	35-01-38.7332	127-53-37.8241	중부	270502.75	281570.92	14.319	진교면 진교리 753-1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5	35-01-38.4475	127-53-36.2428	중부	270493.59	281531.91	19.404	진교면 진교리 727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6	35-01-37.0975	127-53-35.0069	중부	270451.70	281499.96	22.389	진교면 진교리 727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7	35-13-29.0635	127-38-46.7087	중부	292219.53	258838.92	164.048	화개면 운수리 산120-1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8	35-13-27.1405	127-38-45.6927	중부	292160.10	258813.61	161.638	화개면 운수리 산144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19	35-13-26.6589	127-38-43.9492	중부	292144.97	258769.62	159.469	화개면 운수리 산142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20	35-13-25.2765	127-38-41.5911	중부	292101.98	258710.26	151.799	화개면 운수리 산139	2024.01.3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21	35-12-24.4544	127-37-49.3009	중부	290219.04	257399.78	135.242	화개면 삼신리 산149-3	2024.01.31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22	35-12-24.4982	127-37-46.8992	중부	290220.01	257339.02	162.555	화개면 삼신리 산147	2024.01.31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23	35-12-21.5481	127-37-45.5849	중부	290128.88	257306.35	156.178	화개면 삼신리 산149-3	2024.01.31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 근접	W10224	35-12-19.4832	127-37-45.0323	중부	290065.15	257292.78	143.463	화개면 삼신리 산149-3	2024.01.31	기타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2024 - 23호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2. 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7
2. 허가연월일 : 2024. 2. 2.
3. 점·사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803, 72㎡
(인근:적량면 동산리 806)
5. 점·사용의 기간 : 2024. 2. 2.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수도사업과)

하동군 공고 제2024 - 123호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공무원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원칙 및 세부내용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하동군 행정과 전화 880-2165, FAX 880-2159, e-mail) sje94916@korea.kr 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동군의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하동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 의사 및 「하동군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제7조에 따른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에 따른 하동군 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복지제도

제5조(복지제도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2. 복지시설 운영 지원
- 3. 소속공무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
- 4. 직장 등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임신 축하 물품 지급
- 7.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 8.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 9.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
- 10.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임대숙소,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3. 지역경제, 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실태확인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2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③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 날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제13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 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구

성한다.

-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개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이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이다.

1.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계산방식에 따른다.

2.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전입, 퇴직, 직위해제, 파견, 전출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복지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회계처리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 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복지제도 등 통합 운영) 군수는 하동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4-132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귀감이 되는 일반인의 수상기회 확대를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하동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 등을 신설하여 군민상의 권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민상 취지 개선으로 일반인 수상기회 확대(안 제1조~제4조, 제6조)
- 나. 군민상 심사위원회 공정성 확보(안 제8조)
- 다. 군민상 권위 향상 (안 제13조, 제14조, 부칙 제2조)
- 라. 불필요한 자치법규 통폐합 관리 (시행규칙)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1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055-880-2013, FAX 055-880-2019, e-mail
scottfrog@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관련법령 등 각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자에게 하동군 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하동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하며,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하여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군민상: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교육, 효행, 봉사 등 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
2. 특별상: 대내외적으로 하동군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상인원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단,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후보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특별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등록기준지가 하동군인 자

② 군민상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시상할 수 없다.

제5조(공적기간) 공적기간은 수상후보자의 전체기간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 초본 1통

4. 연서추천서 1통(단, 지역주민이 추천할 경우에 한하며,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민상 후보자는 거주지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한다. 단, 특별상은 소관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거주지 읍면장 등은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군민상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조서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군민상 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선정심사를 위하여 군민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조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 공식행사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하동군 포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에 따라 한다사대상을 수상한 자는 제3조에 따른 특별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 별	
2. 공적개요			
<p>위 사람을 년도 하동군 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읍 면 장 부 서 장 대 표 자 (직인) 또는 (인)</p>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연서추천서 1통(단, 지역주민이 추천할 경우에 한함) 5. 공적증빙서류 1통			

연서추천

(부문)

1. 수상후보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2. 연서 추천자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명 ·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하동군 공고 제2024-194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 나.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완료(2023.12.31.) 및 특별회계 미운영에 따라 특별회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도시재생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관련 용어 정비(안 제3조의2)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를 ‘수탁대상 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로 개정

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5)
-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면제대상 명시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신설(안 제3조의6)

라. 도시재생특별회계 규정 삭제(안 제24조)

마. 조문 신설 및 개정에 따른 항 번호 및 약칭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제 8조제1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은 2024년 2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과, 전화
055-880-2137 FAX 055-880-223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각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를 “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납부 방법·시설이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 기업
4. 「청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
5. 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제12조의 주민협의체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3조의6(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① 제3조의5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1. <u>도시재생뉴딜사업</u>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p> <p>2. (생략)</p> <p>③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할 때 <u>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u>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는 연간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p> <p>1. <u>도시재생뉴딜사업</u>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p>	<p>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p> <p>1. <u>도시재생사업</u>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 <u>수탁 대상범위와 수탁기간 및 위탁료·납부방법·시설이용료</u> ----- ----- ----- ----- ----- ----- -----.</p> <p>1. <u>도시재생사업</u> ----- -----</p>

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
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2.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
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
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
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제3조의2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
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사회적 기업
4. 「청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
5. 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제12조의 주민협의체

<신 설>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
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
의 30을 경감한다.

제3조의6(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절차) ① 제3조의5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
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
계획서 내용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24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하동군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
 -- 법 제11조제1항-----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

2.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3.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4.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5.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및 부지 등 매입비용
9.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
10.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11.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12.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13. 도시재생사업 시행 위탁 시 위탁 수수료
1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
재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재
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원활
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
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
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
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필
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
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생 략)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
한 특례) ①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금남면 공고 제2024 - 3호

2024년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불법소각 방지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2024년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금 남 면 장

1 채용 내용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2명	금남면 관내	◦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 소형파쇄기 운영 등 ◦ 관내환경정비, 풀베기작업 등 ◦ 그 외 기타 산업경제계 업무 보조	2024. 2. . ~ 2024. 5. .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 원서접수 응시 인원 및 업무 일정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 가능

2 응시 자격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 우대조건

- 현재 금남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차량 등 이동수단을 갖춘자, 예초기 사용이 가능한 자

3 임금 및 근로조건

- 보 수 : 일급 59,160원/인/일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 4대보험가입 :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임금에서 공제
- 근로시간 : 1일 6시간(09:00~16:00), 주5일 근무(주·월차수당 지급)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4 채용 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

5 공고 및 원서접수

- 기 간 : 2024. 1. 23.(화) ~ 2024. 1. 31.(수)
- 접 수 처 :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055-880-621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 (우편 접수 불가)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1. (목) -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4. 2. 2. (금) - 일정 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 (금) - 개별통지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붙임),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붙임) 각 1부.
- 이력서 1부(붙임 양식 / 사진 첨부, 연락처, 본인 서명 필요)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 전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8 기 타 사 항

- 응시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055-88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앞, 뒷면)
 2. 이력서 1부.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1부.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4년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금남면장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 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 번호						~							

.....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 번호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 아. 기 타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2)

이 력 서

※ 응시 번호		응시분야	2024년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사 진 (3.5cm×4.5cm)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나이	관계	성명	나이	
신체 조건	키	체중		시력			
자격 면허	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경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사무	발 령 청	

2024년 금남면 체육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작성자 : (서명)

금남면장 귀하

[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2024년 산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 밝혀질 시,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4년 월 일

위 확인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4]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하동군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자격사항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채용 종료 후 3년 까지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채용절차 진행	채용 종료 후 3년 까지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채용에 필요한 업무 외에 따로 이용되지 아니 합니다.

202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중

[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24-124호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2. 제안 이유 :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휴양시설 이용기준 및 신청 관련 내용 정비, 별표 현행화 및 별지 삭제
4. 의견 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하동군 행정과 전화 880-2165, FAX 880-2159, e-mail) sje94916@korea.kr 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공무원 등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하동군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3. 하동군의회 의원
4. 공중보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제3조(이용신청대상)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신청대상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부부공무원(군 소속 공무원 등에 한함)의 경우 1명으로 본다.

제4조(주관부서) 콘도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주관부서는 행정과(맞춤형복지 업무 담당)로 한다.

제5조(이용시설) 이용시설은 군 소유 콘도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며 이용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용기준) ①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무단대여 할 시는 3년간 콘도 이용권을 제한한다.

② 콘도 이용신청 시 신청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중복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 1. 부서별 연찬회(계획서 제출)
- 2. 전년도 미이용자
- 3. 하위직 직원

③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휴직 중인 자
- 2.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제7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도이용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그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등) ① 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콘도 이용 변경·취소에 관한 내용을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전 통지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콘도이용을 제한한다.

제9조(시설이용료 부담) 콘도 이용에 따른 객실, 부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는 콘도 이용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콘도 이용가능일수 및 이용가능지역(제5조 관련)

1. 한화콘도미니엄(38평형 2구좌)

구 분	이용가능일수 (1구좌당)	기 간	이용가능지역
계	28박	-	<한화 호텔&리조트> 경상도 - 경주, 백암(울진), 거제, 여수 부산광역시 - 해운대, 기장(오시리아) 충청도 - 대천(보령) 강원도 - 설악(속초), 양양, 평창 제주도 - 제주 경기도 - 용인, 산정호수(포천) 서울(더플라자)
여름성수기	4	매년 7. 10. ~ 8. 20.	<제휴리조트> 휘닉스 평창(강원도 평창) 엘리시안강촌(강원도 춘천) The-K지리산가족호텔(전남 구례) 수안보상록호텔(충북 충주) 양평 블룸비스타(경기 양평) 아덴힐리조트(제주) 엘리시안(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제주)
겨울성수기	5	매년 12. 20. ~ 다음해 1. 31. (단 스키장지역은 다음해 2월말까지)	레오팔레스 리조트(광) 리조나레(광) 퓨전스위트 하노이(베트남 하노이) 퓨전 스위트 다낭(베트남 다낭)
주말/연휴	9	토요일.휴일	
평일	10	-	

2. 소노콘도미니엄(패밀리형 1구좌, 스위트형 2구좌)

구 분	이용가능일수 (1구좌당)	기 간	이용가능지역
계	30박	-	<소노 호텔&리조트> 경상도 - 경주, 여수, 거제, 청송 전라도 - 변산(부안), 진도썰비치, 단양 경기도 - 양평, 고양 충청도 - 단양, 천안 강원도 - 비발디(홍천), 설악(고성) 양양 썰비치, 고성 델피노, 삼척 썰비치, 제주도 - 제주(북제주) 베트남 - 하이퐁(하노이)
여름성수기	3	매년 7. 10. ~ 8. 20.	
겨울성수기	4	매년 12. 20 ~ 다음해 1. 3 (단 스키장지역은 다음해 2월말까지)	
주말/연휴	11	금.토요일.휴일	
평일	12	-	<제휴리조트> 그랜드 엘시티 레지던스(해운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와이키키(하와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라스베가스(미국)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뉴욕(미국) 아웃리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하와이) 아웃리저 카오락 비치 리조트(태국) 아웃리저 수린 비치 리조트(태국)

3. 일성콘도미니엄(30평형 3구좌)

구 분	이용가능일수 (1구좌당)	기 간	이용가능지역
계	30박	-	<일성 콘도&리조트> 경상도 - 부곡, 경주 전라도 - 무주, 지리산(남원) 경기도 - 남한강콘도(여주) 강원도 - 설악(고성) 제주도 - 제주(북제주)
여름성수기	2	매년 7. 10. ~ 8. 20.	
겨울성수기	2	매년 12. 20 ~ 다음해 1. 31. (단 스키장지역은 다음해 2월말까지)	
주말/연휴	6	토요일.휴일	
평일	20	-	<제휴리조트> 골든서울호텔(서울) 청풍리조트(충북 제천) 웰리힐리파크(강원도 횡성) 경주코오롱호텔(경북 경주) 양지파인리조트(경기도 용인) 대아울릉리조트(경북 울릉) 온양관광호텔(충남 아산) 코모도호텔(부산)

하동군 공고 제2024-125호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1. 신청기간 : (동계) 2024. 2. 1. ~ 3. 31. / (하계) 2024. 2.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 (동계) 밀·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두류·가루쌀 재배시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락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락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아리이그라스, 토끼풀, 툴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6~10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의 곡물, 목초 및 꽃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23년 하계조사료 품목으로 전락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및 '21~'23년 기간 중 지자체의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다. (이모작) 논(밭)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4-128호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2. 폐지 이유 :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운영 규정 폐지
3. 주요 내용 :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
4. 의견 제출 :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하동군 행정과 전화 880-2165, FAX 880-2159, e-mail) sje94916@korea.kr 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1부.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참고**현행 조례**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시행 2017.07.18]

(일부개정) 2017.07.18 훈령 제3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 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공통복지점수”라 함은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군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무원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②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날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제 3호 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제10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9.>

③ 전입·복직·임용 등의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한다.

제5조(운영원칙)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배정)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공통점수 : 전 직원에게 55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9.1.21., 2011.1.27.>

2. 근속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11.1.27., 2017.7.18.>

3. 가족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명당(4명이내)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자녀포함) 배정한다. 다만, 만 6세미만 자녀는 100점을 배정하되,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은 최고 1,0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4.1.22., 개정 2017.7.18.>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2월 말일)으로 확정되며, 적용기간 중 변동 점수는 더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월) ① 해당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이월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남은 점수는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해당 연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되며, 추가 또는 변경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다음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기간 이전에 결정한다.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재래시장과 토털장레서비스 가입은 자율항목으로 한다. <개정 2009.1.21.>

제12조(회계처리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맞춤형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이 규정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단체 및 전체 공무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 담당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복지실태확인 등) 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도입·운영·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자료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그 밖에 필요사항 등)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맞춤형 복지제도의 자율항목 및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4-130호

서식 1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하동군에서는 하동 관내 공실(空室)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청년(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대상주택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23.

하 동 군 수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하동군 내 위치한 10년 이상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가 가능한 주택

※ 제외대상 :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소유권 및 근저당 등)

○ 입주대상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함)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2,000만원)

※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이 2,200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단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기준 완화됨(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지원조건 :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

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4년*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 : 2년

1,000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2,000만원)×48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하동군 건축과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

※ 신청서식

- 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군 건축과 비치

○ 신청기한 : 202 . 00. 00. ~ 00. 00.(일간)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하동군)
- 임차인 모집
- 하동군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 간 임대차계약
- 주택(10년이상)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단,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에 한함)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군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해당 임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 등을 설정함
- 임대자는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임대주택을 매매할 수 없음
- 부득이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사유가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군 및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군에 보고하여야 함(미 보고 시 발생한 공실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공실의 사유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도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됨)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금 = 지원금 - {(지원금 ÷ 의무임대기간) × (의무임대기간 - 잔여임대기간)}

* 잔여임대기간은 월할로 계산하고 잔여일수는 버림

예시) 지원금 2,000만원을 받고 잔여임대기간이 23개월 20일인 경우(의무임대기간 48개월)

⇒ 9,583,330원 = [2,000만원 - {(2,000만원 ÷ 48개월) × (48-23)}] *원단위 절사

- 보조사업자(임대인)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 준수
- 부가세 포함 사업비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초과 시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자부담 5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5. 문의사항 : 하동군 건축과 건축행정부서(055-880-2148)

서식 2

임대신청서

임대신청서

건 물 현 황	소 재 지(지번)			건축년도	
	연면적(m ²)/층수	m ²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 선 계 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공사내역 - - ○ 지원 요청액 : 원				
임 대 희 망 사 항	임대 방법		반값 임대료		
	전세	월세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예상 견적서					

서식 6

임대인 선정 배점표

임대인	위 치		대 상	주택유형
			예시) 주택(10년이상)	예시) 주택 등
건축연도	구 조	견적비용	예상 임차료(천원)	
	예시) 철근콘크리트조	천원	보증금 :	/ 월세 :

구 분	기 준	기준점수	산출점수
합 계			점
주 택 노 후 도 ※배점: 20	22년 이상	5	점
	18년 이상 ~ 22년 미만	10	
	14년 이상 ~ 18년 미만	15	
	10년 이상 ~ 14년 미만	20	
리모델링지수 (사업비/20백만원) ※배점: 15	2 이상	15	점
	1 이상 ~ 2 미만	10	
	1 미만	5	
의무임대기간 ※배점: 20	3년 이상 4년 미만	20	점
	2년 이상 3년 미만	10	
반경 500m 이내 주차장 유무 ※배점: 5	유 / 무	5 / 0	점
반경 300m 내 버스정류장 유무 ※배점: 5	유 / 무	5 / 0	점
범죄 예방성 ※배점: 10	경비원 또는 CCTV 유 / 무	10 / 0	점
반값 임대료 ※배점: 25	월세 5만원 이하 또는 전세 100만원 이하	25	점
	월세 10만원 이하 또는 전세 300만원 이하	20	
	월세 20만원 이하 또는 전세 500만원 이하	10	
	월세 20만원 이상 또는 전세 500만원 이상	5	

※ 제외대상 :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소유권 및 근저당 등)

하동군 공고 제 2024 - 135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및 제1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1월 24일

하 동 군 수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일반용지 1장당 60원 라벨용지 1장당 250원	USB 1개당 3,000원 (신청인이 USB 등 별도 저장매체 제출 시 무료 제공)	

하동군 공고 제2024-158호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주요배출원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 구입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29.

하 동 군 수

□ 지원계획

- 대 상 :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지원규모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기준 : 처리기기 설치비용의 50% 지원
 - 기기렌탈은 연간렌탈비용의 50% 지원
- 대상자 결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하동군청(환경보호과)
- 신청기간 : 2024. 1. 29. ~ 2024. 2. 16.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 지원 보조사업 신청서(별지1호서식)
-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 단체소개서(별지3호서식), 최근 2년간 실적(별지3-1서식)
- 2024년도 세부사업계획(별지3-2서식)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4호서식)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필증 1부

□ 지원기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우선순위
 - ① 1순위 : 기 지원(임대) 사업장
 - ② 2순위 : 공공기관(학교)
 - ③ 3순위 : 일반음식점 중 연간처리량 다량우선
 - ④ 4순위 : 사업장면적(m²), 집단급식인원수(집단급식소에 한함)

[음식물처리기기 지원기준]

- 지원기준 : 기기구매 또는 임대료(1년기준)의 50% 지원
 - 공공기관 : 구매 또는 임대 지원
 - 공공기관 외 : 구매 지원
- 지원기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처리기기

구 분	해 당 사 항	
총 족 조 건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감량기준	○ 규모미만 폐기물재활용시설
관 련 법 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관 련 규 정	○ 가열·건조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함량 25퍼센트 미만 감량 또는 ○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	○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3 제3호 가목1)부터 4)가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 ○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해당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한정

※ 신청사업자 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문의사항 및 의문사항은 하동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서식 (별지1호서식)
 2.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3. 단체소개서(별지3호서식),
 4. 최근 2년간 실적(별지3-1서식)
 5. 2024년도 세부사업계획(별지3-2서식)
 6.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4호서식)

(붙임 1)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록기관	
행사유형		회 원 수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휴대폰) - - (e-mail)	
	생년월일		
전화번호(代)			
주 소 (-)			
실 무 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2.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 (다량배출사업장 기 신고현황)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년)	부산물 발생량 (kg/년)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3. 음식물처리기기 신청

(단위 : 천원)

제 품 명 (모델 및 제조사)	처리 방식	처리 용량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방식 (렌탈 또는 구입)
				계	군비	자부담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금법」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단체명
대표자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 . . . ~ .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

- 국 비 : / 도비 : 시군비 :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마. 추진방법 : ○○단체 기기렌탈

바.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렌탈 또는 구입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고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산출내역	재 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 . . .		

6. 기대효과

-
-

(붙임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00000)		
	연락처	전화 : 신청사업담당자 :	FAX E-Mail	055- @
	홈페이지	-		
고유번호 등	등록기관	○○세무서	등록일	0000. 00. 00
	법인번호	고유번호 000-00-00000		
설립목적	○○추진			
단체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00. 00. : 비영리법인등록(진주세무서) ○ '00. 00. 00. : 제1회 ○○축제 개최 ○ '00. 00. 00. : ○○단체 변경등록 (변경 전 명칭 : ○○단체명)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대표 : 위원장, 성명, 홍길동, 현직업, 농업(이장) 연락처 010-000-0000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00명 (사무국장 0, 기획 0, 차장 0) ○ 회원수 : 00명 ○ 조직도(기구표) : 위원장-사무국장-기획팀장-사무차장-이사(00명) 			
당해연도 예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000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18.86%), 정부보조(62.30%), 시비보조(18.84%), 기타(%) 			
최근2년간 활동 실적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별첨 1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획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별첨 2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등

* 단,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시 붙임목록만 제출(증빙자료 실과보관)

(붙임 3-1)

【최근 2년간 실적】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당해연도 활동실적 있을 경우 추가 기재 가능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일시(기간) /장소	사 업 내 용	사업비			기타 (관광 객수)
				계	보조금	자부담	
2023							
	소 계			0	0	0	
2022							
	소 계			0	0	0	

(붙임 3-2)

【 2024년도 사업세부계획 】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서식 적의 변경 가능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소 요 금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예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기기렌탈	예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기기렌탈						
	00월						
	00월						
	00월						
	00월						

(붙임 4)

지방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이용사무의 명칭 : 하동군 지방보조사업 업무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본인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3.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에 따른 「체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시 본인의 체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조사업 업무 이외에 따로 보관하거나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 .